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6일, 황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 희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가.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 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스포츠윤리조사원----------.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조사원의 설립) 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을----------. ②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③ 스포츠윤리조사원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스포츠윤리조사원의----------스포츠윤리조사원의----------.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스포츠윤리조사원의----------스포츠윤리조사원 파견----------.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조사원이----------스포츠윤리조사원 또는----------.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⑦ 스포츠윤리조사원은----------. ----------스포츠윤리조사원이----------.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스포츠윤리조사원에----------.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스포츠윤리조사원----------.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조사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⑤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스포츠윤리조사원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스포츠윤리조사원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조사원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스포츠윤리조사원이----------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스포츠윤리조사원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조사원은----------.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스포츠윤리조사원----------.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	10. ----------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스포츠윤리조사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스포츠윤리조사원의----------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됨.[1)]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장관의 감독을 받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3년 기준 총 1,662건의 상담과 630건의 신고 접수[2)], 609건의 사건 조사 중 137건의 징계요청 등을 수행하였음[3)].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2) [연도별 사건 신고·상담 접수현황] ('20.9.2.~'24.7.31., 단위: 건)

	구분	인권침해					비리						단순 문의 등	합계
		성폭력 성희롱	폭력	그 외 인권 침해	기타	소계	조직 사유화	횡령 배임	승부 조작	입시 비리	기타	소계		
2020	상담	14	38	30	159	241	2	5	4	2	35	48	7	296
	신고	4	22	10	4	40	14	14	3	1	29	61	0	101
2021	상담	50	171	149	36	406	10	34	13	6	330	393	230	1,029
	신고	23	68	59	6	156	9	19	7	0	180	215	0	371
2022	상담	71	216	261	8	556	63	64	55	6	280	468	351	1,375
	신고	31	102	79	0	212	20	27	12	2	181	242	0	454
2023	상담	87	259	279	43	668	97	126	100	5	438	766	228	1,662
	신고	49	107	101	5	262	44	57	24	0	243	368	0	630
2024	상담	59	171	151	43	424	94	67	56	4	198	419	327	1,170
	신고	32	80	70	21	203	64	34	28	2	108	236	0	439
총계	상담	281	855	870	289	2,295	266	296	228	23	1,281	2,094	1,143	5,532
	신고	139	379	319	36	873	151	151	74	5	741	1,122	0	1,995

자료: 문체부

3) [연도별 사건 처리현황] ('20.9.2.~'24.7.31., 단위: 건)

연도	처리완료										
	징계요청	수사의뢰	감사의뢰	기관경고	기각	각하	취하	권고	직권조사	이송	합계
2020	3	1	0	0	2	6	5	0	0	0	17
2021	46	9	1	2	14	51	103	5	0	0	231
2022	69	6	3	13	36	101	159	10	1	0	398
2023	137	4	1	11	116	107	210	21	0	2	609
2024	103	2	1	4	93	94	122	8	0	0	427
소계	358	22	6	30	261	359	599	44	1	2	1,682

자료: 문체부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 전담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4] 지난 4년간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의 고유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인지도 저하 및 혼란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점, 동 센터는 사건 조사 외에도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5] 명칭 변경으로 인해 센터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6].

---

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사한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다른 한편, ‘센터’라는 명칭이 오히려 사건조사·고발·징계요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조사원이 수행한 조사의 절차·내용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7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내용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스포츠윤리조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사의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구체적인 사항은----------.

(2) 검토의견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한 사건 또는 직권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7]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 내부 규정은 센터가 사건처리 결과를 당사자(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뿐[8], 내부 규정 및 현행법

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당사자"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를 말한다.
제31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센터이사장은 사건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04. 03.>
1. 해당 당사자에 대한 조사없이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의 각하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신설 2023. 04. 03.>
2. 해당 당사자가 처리결과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신설 2023. 04. 03.>
②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04. 03.>
1. 신고의 각하, 신고취하에 의한 사건종결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모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해 관련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9].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조사원이 수행한 조사의 절차·내용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

2. 신고를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심의위원회에서 법 제18조의9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발, 징계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이하 "고발 및 징계요구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9) [스포츠윤리센터 통제 수단]

조사 절차	○'스포츠윤리센터 민원사무관리지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진정 제기 가능 **제2조(정의)** ② 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센터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이의신청 및 진정 **제6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민원의 접수 · 관리)** ① 민원에 관한 사항은 청문감사담당관이 접수한다. ② 청문감사담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법·부당행위	○'스포츠윤리센터 청문감사 규정' 등에 따라 통제 **제5조(권한)** ③ 청문감사담당관은 대상부서 등이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대상부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부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에게 해당 직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교체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사무처리)** ① 청문감사담당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청문감사담당관은 직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센터이사장에게 보고 후 그 처리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청문감사담당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민원인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직원 등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식 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별도 이의신청 절차 없음 - 피신고인의 경우 새로운 증거, 사실오인 등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서 실제 징계 심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피신고인의 소명·불복 기회)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 <징계 관할 체육단체> 징계 심의 → <상급 체육단체> 징계 재심의 → <법원> 민사소송)

접수한 스포츠윤리조사원은 그와 관련된 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관련 규정[10]을 위반한 임의적인 조사 진행 및 절차적 하자 등을 방지하고 새로운 증거 반영 등을 통해 조사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초기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의무, 이의신청 기한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과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지연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입법례 등을 준용하여 피신고자를 제외한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1].

---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규정」,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 규칙」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불송치 결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다. 문체부장관의 징계 재요구권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문체부장관이 징계 조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체육단체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12)]

일례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13)].

---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대한체육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전정지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요구를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와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결과가 징계 요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재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이래로 377건의 징계요구 중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 결과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43%(162건)에 달하는바,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및 체육단체의 미보고 현황

	2020 (9.2.~)	2021	2022	2023	2024 (~8.31.)	계
징계요구*(건)	3	46	69	137	122	377
미보고(건)	0	2	9	54	97	162

*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요구한 경우는 0건으로, 모두 윤리센터의 요청에 의한 징계요구임.

** ('20.8.~'24.4.) '중징계 사유'로 징계 요구한 188건 중 조치 결과가 경징계 33건(18%), 미회신 64건(34%)
(중징계 사유: 폭력, 성폭력·추행·희롱, 인권침해, 괴롭힘,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선거관련 비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문체부장관에 대한 징계 재요구 요청권, 징계 재요구 받은 체육단체의 재심의 기한 및 보고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없 음